

입시공정관리위원회규정

제정 1993.12.01 1차 개정 2012.02.10
2차 개정 2016.0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정보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 학칙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입시공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2.1.>

제2조(구성 및 직무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, 위원은 본 대학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6.2.1.>

1.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.
3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4. 위원은 관련 사무의 심의에 임하며 위원장이 위촉한 사항을 수행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입시 세부시행 계획의 검토
2. 입시관련 전산 업무의 검토
3. 입시 부정 방지대책의 수립
4. 입시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
5. 기타 입시와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하는 제반사항

제4조(회의 및 의결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확인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